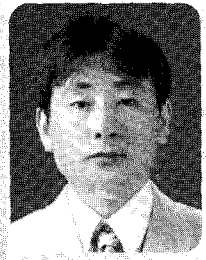


한국도서관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나

문 세 흥

탐라도서관 사서
yuha1999@empas.com



다달이 회원이라서 받아보는 한국도서관협회 기관지 《도서관문화》는 비교적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기사는 정독을 하고, 최소한 읽지 못한 기사는 책갈피라도 끼워둔다.(이 걸 책을 열심히 만든 분들은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 하다.)

2010년 1월호 기사 중 알림자료(63-72p.)에 공감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법률적 내용들이라 다소 딱딱하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간단히 소회를 밝힌다.

첫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사서는 독립된 직렬로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한국도서관협회 의견을 보면서 나는 1995년 사서교육 과정에 만났던 단정한 군복 차림의 강모 중령과 역시 2005년 6월 복무 중이던 조카를 생각하며 『한겨레신문』에 기사 - '각급 부대 병영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사서자격증 소지자 출신 사병의 '사서' 특기병과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 -를 기고한 기억이 있어서 위의 조항은 모처럼 나를 들뜨게 하였다.

둘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사서)에서도 일반직 중

사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사정상 기능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나는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사서수당 미지급 조치 시정의 권'으로 진정한 것을 회고하였다. 나는 위의 조항이 기능직 공무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인권위가 이를 시정하여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결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각 결정되었지만...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도서관법」 제30조 2항(사서직 관장)의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2008년 3월 사서직 관장을 처음으로 배출하였으며, 11월 전국 최초의 지역대표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복수직렬이지만 5급 이상의 5명 이상을 사서직 관장 등으로 보임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어 나는 위의 조항이 무난히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1945년 이후 「도서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이후 그리고 사서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도서관 및 도서관인을 총망라한 도서관 연합체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1관당 평균 봉사대상 인구' 전국 1위로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에 공공도서관(기적의도서관 2개관 포함)이 있는 공공도서관 선진 지역이다. 이와 같이 나는 한국도서관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지극심을 늘 간직하면서 협회 회원으로서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주장에도 주목하고 싶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약과 전진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소임을 완수하고자 한다. 새해에는 우리협회와 회원, 제주특별자치도민과 나 모두의 새로운 분발과 다양한 성과가 있기를 소망한다. ☺